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9. 14.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 라. 상정일자 :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10년 9월 7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가. 제안이유

-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명시
(안 제1조·제2조·제3조)
-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 기관, 범죄피해센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과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운영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홍보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련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와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과 여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구를 만들어가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8 호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과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를 구성·운영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1) 구 성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내

2) 위 원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호선), 공무원, 구의원, 아동·여성보호관련 기관·시설 대표 또는 위임받은자

3) 임 기 : 2년(연임 가능)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홍보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제정 조례안 : 별첨
- 2) 입법예고 (2010. 5.13 ~ 6. 2)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되, 영등포구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

또는 시설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3장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